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261

발의연월일: 2021. 4. 1.

발 의 자: 변재일 · 김민기 · 김민석

문진석・박홍근・설 훈

양경숙 • 이정문 • 임호선

홍성국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작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 통신사업자는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경우 이용자 보호 업무 등을 대리하는 자를 서면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최근 구글의 서비스 장애 발생 시에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도록 개선을 조치('21.2월)하는 등 이용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음.

한편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자의 보호를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서비스 안정성 확보 현황 자료제출 의무화, 트래픽 양 측정 투명성확보, 서비스 안정성 관련 국내대리인의 업무범위 명확화 등이 필요하나 대통령령에서 규율하기에는 위임입법 범위를 벗어날 우려가 있어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 개정이 긴히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부가통신사업자가 정기적인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이행 현황

관련 자료, 트래픽 양 현황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국내 대리인의 업무 범위에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이행을 추가하여 이용자가 더욱 안정적인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하는 것임(안 제22조의7제2항·제3항 및 제22조의8제1항제3호 신설등).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7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관련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의 현황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는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행 현황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매년 1 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 통신서비스 전송 속도가 저하되는 등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장애 가 발생하거나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이 중단되어 제1항에 따른 부가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에 저해가 되 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조치를 이행한 현황 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의8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2조의7에 따른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의 이행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의7(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	제22조의7(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
스 안정성 확보 등) (생 략)	스 안정성 확보 등) <u>①</u> (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
<u> <신 설></u>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가
	통신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기
	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하여 해당 부가통신사업
	자 또는 관련 전기통신사업자에
	게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의
	현황을 요청할 수 있다.
<u><신 설></u>	③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자는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행 현황에 관한 자료를 작성
	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에게 매년 1월 말까지 제출하여
	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장관은 전기통신서비스 전
	송 속도가 저하되는 등 전기통
	신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발생하
	거나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이 중
	단되어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
	비스의 안정성 확보에 저해가

제22조의8(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지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제22조의 7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한다.

②·③ (생 략)

1. • 2. (생략)

<신 설>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비스	<u>.</u>
안정수단의 확보 조치를 이행힌	-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_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u>.</u>
제22조의8(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
	-
	-
	-
	-
·	
1.•2. (현행과 같음)	
3. 제22조의7에 따른 서비스 인	-
정성 확보 등의 이행	
②·③ (현행과 같음)	